◉환경부령 제116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3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일반의료폐기물 제외 대상) 영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검진을 말한다.

제1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고시된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2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정해야 하는 내용의 특성상 6개월 이내에 시정하는 것이 명백하게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의 09-03-00란 중 “그 밖의 폐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의 09-03-00란 다음에 09-04-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별표 4의3 제1호의 09-03-00의 폐기물의 종류란 중 “그 밖의 폐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의 09-03-00란 다음에 09-04-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9-04-0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	R-2-1	해당 없음

별표 5 제1호나목2)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재질로서”를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로, “재질로 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가목3)나) 단서 중 “재질로서”를 “재질, 구조, 형태 등으로서”로, “재질로 제작된”을 “기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거)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매립처분하여야 한다(내화성 세라믹섬유만 해당한다).

별표 5 제5호마목2)나) 중 “100킬로그램”을 “5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목 11)을 삭제한다.

별표 9 제1호다목8)마)(3) 중 “체류”를 “혼합 및 체류”로 하고, 같은 마)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부터 (3)까지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별표 9 제3호가목7)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다목4)가) 본문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실”을 “열분해시설은 폐기물투입장치, 열분해로”로 하고, 같은 4) 나), 마) 및 바) 중 “열분해실”을 각각 “열분해로”로 하며, 같은 4) 사) 중 “열분해실은”을 “열분해로는”으로 하고, 같은 4) 아) 중 “청소구”를 “잔재물 배출구”로 하며, 같은 4) 차)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을 “열분해시설”로,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또는 가스”로 한다.

별표 9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선별시설

1) 분리선별, 비중차(比重差)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光學)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의 선별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나)부터 라)까지의 기준은 선별시설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의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보관해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침하·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선별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을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춰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7호 표의 설치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를 “열분해”로,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청소구”를 “잔재물 배출구”로,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로 하고, 같은 표의 정기검사의 검사항목란 중 “열분해(가스화를 포함한다)”를 “열분해”로,

“열분해실”을 “열분해로”로, “열분해유”를 “열분해유, 가스”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1)가)(9) 단서 중 “처분용량”을 “처분용량(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1일 단위로 산정하되, 연속식 소각시설인 경우에는 실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바)(1)(다) 중 “체류”를 “혼합 및 체류”로 하고, 같은 (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제41조제9항에 따른 검사 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2)바)(2) 중 “초과하여”를 “초과하거나 연속하여”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2)나)(1) 중 “열분해실은”을 “열분해로는”으로 하고, 같은 나) (2)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의”를 “열분해시설은 열분해유 또는 가스의”로 하며, 같은 나) (3) 중 “가스화시설이 아닌 열분해시설은 저장탱크에 저장되는 열분해유의”를 “열분해시설은 발생하는 열분해유, 가스의”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6)차) 단서 중 “재활용용량”을 “재활용용량(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1일 단위로 산정하되, 연속식 소각열회수시설인 경우에는 실제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월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으로 한다.

별표 14 표 라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다만, 사료화·퇴비화시설인 경우에는 1일 재활용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쪽 귀하란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2조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 및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7일

3. 별표 9 제3호자목2)다) 및 라)의 개정규정: 2025년 12월 31일

4. 별표 11 제2호가목1)가)(9) 단서 및 같은 호 다목6)차)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제2조(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자목2)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생활폐기물 선별시설 설치를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폐기물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인화성 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중소 의료기관도 신기술의 멸균분쇄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의 처분능력에 대하여 종전에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간당 처분능력이 50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정하여 그 시설기준을 완화하며, 다양한 멸균 기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이 종전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멸균능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